

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

『인천광역시 건축 조례』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『인천광역시의회 회의 규칙』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5년 6월 19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1. 제안이유

- 가.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 및 장소에 대하여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음에 따라
- 나. 실외 흡연실을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정하여 흡연자의 흡연권 보장과 비흡연자를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경량철골 조립식 구조 및 불연재로서 실외 흡연실 용도로 사용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(다만, 도로에 건축하는 실외 흡연실은 제외)을 가설건축물에 추가(안 제18조제3항제6호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9일(18:00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(참조 :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, 전화 032-440-6245, 팩스 032-440-8766, 이메일 : adiosever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 출 자	해당사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 고
○ 주 소 :			
○ 성 명 :			
○ 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참고자료

가.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5조제5항제15조의 규정”을 “제15조제5항제15호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경량철골 조립식 구조 및 불연재로서 실외 흡연실 용도로 사용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(다만, 「도로법」에 따른 도로에 건축하는 실외 흡연실은 제외)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가설건축물) ①·② (생략)	제18조(가설건축물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영 제15조제5항제15조의 규정에서 “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지상 1층으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.	③ -- 제15조제5항제15호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5.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6. <u>경량철골 조립식 구조 및 불연재로서 실외 흡연실 용도로 사용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(다만, 「도로법」에 따른 도로에 건축하는 실외 흡연실은 제외)</u>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